

#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**튼튼론** 운전자금 특별용자 시행 공고
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용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- 용자규모 : 최대 20,000백만원
- 지원형태 : 용자 (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)
- 용자대상
  -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: 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(단, 회원제 체육시설,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)
  - ②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
  -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: 국내(외국계 업체 제외) 스포츠경기업체, 스포츠마케팅업체, 스포츠정보업체
- 용자이율 :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(20년 1/4분기 1.50%, 분기별 변동금리)
- 용자조건

대 상	분 야	한도		상환조건	자격요건 등	
		일반업체	코로나19 피해업체			
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	운전자금	2억원	4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</li> </ul>	
스포츠서비스업체	운전자금	2억원	4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, 스포츠마케팅업,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(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,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)</li> </ul>	
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	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(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장업) 및 요트장, 조정장, 카누장, 빙상장, 승마장,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,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(단,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)	운전자금	2억원	4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</li> <li>■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(코로나피해업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, 일반 업체의 선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.)</li> </ul>
	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, 볼링장, 수영장(어린이수영장)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궁도장, 게이트볼장, 농구장(유소년농구장), 당구장, 리켓볼장, 럭비풋볼장, 롤러스케이팅장, 배구장, 배드민턴장, 볼슬레이장, 사격장, 세팍타크로장, 수상스키장, 스킨스노우장, 썰매장, 씨름장, 야구장, 양궁장, 역도장, 에어로빅장, 육상장, 체육도장, 체조장, 축구장(풋살장), 탁구장, 펜싱장, 하키장, 핸드볼장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인공암벽장, 인공서핑장, BMX경기장, MTB경기장, 스케이트보드장, 파크골프장, 인라인스케이팅장, 필라테스, 족구장, 케이ابل건, 인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(단,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)	운전자금	1억원	4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풋살장, 어린이수영장, 유소년농구장, 리틀야구장, 스크린야구장,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용자대상 가능 (단,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)</li> <li>■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으로 신청 가능</li> <li>■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운동종목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신규 반영</li> </ul>
	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	운전자금		10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(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 조건)</li> <li>■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(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)</li> <li>■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(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)</li> <li>- 단,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: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</li> </ul>
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	운전자금		10억원	5년 (거치기간2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(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) 관련 사항</li> </ul>	

※ 등록체육시설업 -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장업  
 ※ 신고체육시설업 -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야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

**<유의사항>**

- 코로나 19 피해기업 입증 시, 용자 한도 상향 조정 (피해기업 입증은 붙임 1 참고)
  - \* 대중제 골프장 전환 및 프로스포츠단연고 경기장은 최대 10억원 동일
-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한하여 동일사업자의 용자한도액(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용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)을 초과하여 특별용자 신청 가능
- 부지매입비, 인수권리금 등 부동산구입비로 사용 불가 / 대한의 용도로 사용 불가

- **용자(대출)방법 :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**
  -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용자(대출)지원 결정금액 통보
    - ※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, 사업진행정도, 자기자본력,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, 업체선정 예정
  -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용자(대출)금액 확정, 수령
  -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\*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
- **보증 및 담보평가 : 용자(대출)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(용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)**
  - ※ 취급은행 : 경남, 국민, 광주, 농협중앙회, 대구, 부산, 수협중앙회, 신한, 씨티, 우리, 전북, 제주, 중소기업, KEB하나

- **신청기간 및 접수방법**
  - **접수기간(예정) : 2020. 03. 12 ~ 2020. 04. 03 (15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/ \* 최종 일정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 공고 재확인**
  - **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/healthyloan@kspo.or.kr (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)**
    - \* 접수 후 신청결과(반려/접수완료) 이메일 회신 예정, 신청결과 이메일 미확인 시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
    - \* 스포비즈 홈페이지([www.spobiz.or.kr](http://www.spobiz.or.kr)) 기업회원 가입 필수
  - **제출서류**
    - 용자신청서 : 홈페이지([www.spobiz.or.kr](http://www.spobiz.or.kr)>공고>스포츠산업용자>신청서 등 다운로드)에서 다운받아 작성
    - 사업계획서, 용자추천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용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 일체\*
      - \* 용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의 "용자신청 제출서류"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선정 및 용자(대출)절차**



- **진행절차**
  - 신청접수를 받아 기금융자심의회의를 개최·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통보함
  - 지급기한 내에 용자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기한 내에 용자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
  - 세부절차
    - 공단에서 선정업체 및 금융기관에 '결정통보서' 발송 → 선정업체는 '결정통보서'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용자신청 진행 → 금융기관에서 공단에 최종 용자금 지급 요청(FAX, 이메일로 접수된 공문) → 금융기관은 업체에 용자 시행

- **유의사항(필독)**
  - 접수마감일·마감시간 이후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.
  - **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용자사업자를 선정하지만,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용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**
  - 사업 수행 후 국제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으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- ※ **용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,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자신청 전 해당 신청용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.**

■ **문의처 :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상담실**  
 - TEL: 1566-4573, FAX: 02-410-1575, E-mail : [healthyloan@kspo.or.kr](mailto:healthyloan@kspo.or.kr)

**붙임 1**

**코로나19 관련 피해 스포츠기업 요건 세부사항 및 증빙방법**

구분	요건 세부사항	증빙방법
직접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(대상)코로나19 관련 피해 전·후(비교시점)* 매출액 10% 이상 감소 기업</u></li> <li>- 비교시점 : 신청전월과 전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,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 신청전 1개월과 전년 1개월,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, 신청당월(추정)과 신청전월, 신청당월(추정)과 전년동월 등</li> <li>- 기산시점 :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 ('19.12.1) 이후부터 피해 기산</li> <li>- 신청월 기준 : '20. 3월 ~4월중 선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(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)</li> <li>- POS로 확인된 매출액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처, 인쇄물 등)</li> <li>-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내역 혹은 통장 입금내역 등</li> </ul>
간접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(대상) 기타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실 증명 기업</u></li> <li>- 주거래처 생산지연 및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li>- 중국 수출입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li>- 기타 입증 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 납품연기에 관한 서류 및 통보서 등</li> <li>- 중국 수출입 불가 관련 서류 등</li> <li>- 기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가능한 서류 등</li> </ul>

## 붙임 2

##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용자 신청 구비서류 목록

구비서류	체육시설업체	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	스포츠서비스업체	내용	
	운전자금	운전자금	운전자금		
① 용자신청서	●	●	●	·공단홈페이지-용자페이지 (다운로드) ·누락없이 빠짐없이 기입	
② 사업계획서 (용자신청서 양식내 포함)	●	●	●		
③ 용자추천서 (금융기관 날인 필수)	●	●	●		
④ 서약서	●	●	●		
⑤ 사업자등록증	●	●	●	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해당사업(종목) 명기 필수 대표자 명의로 신청 필수	
⑥ 법인등기부등본	△	△	△	법인사업자일 경우 필수	
⑦ 최근결산재무제표, 소득금액증명원 (부가세 납부영수증 등)	●	●	●	신규업체의 경우 제출 제외 * 당해연도 기 제출 서류와 변동 없을 경우 생략가능	
⑧ 마케팅권리계약서			△	스포츠서비스업체-스포츠 마케팅업 사업자 필수	
⑨ 등기부등본 (건물, 토지)	●			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등본 생략가능	
⑩ 임대차계약서	△	△	△	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업체의 경우 필수 제출	
⑪ 운전자금 관련 증빙서류 (인건비, 수도광열비 등)	●	●	●	운전자금 소요내역 산출근 거의 증빙자료 필수 제출 *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수도 광열비고지서, 홍보견적서 등	
⑫ 세부도면	△			(예상)도면 등 * 당해연도 기 제출 서류와 변동 없을 경우 생략가능	
⑬ 현장사진	△	△	△	피해사실 관련 입증 필요시 제출	
⑭ 신고체육시설 증명서,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증명서	△◎			신고체육시설업체 필수 제출 단, 신규업체의 경우 준공후 제출 가능(보완서류)	
코로나 19 피해기업 해당 시	⑮ 매출액 감소 관련 증빙자료	△	△	△	비교시점 전·후 매출증빙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자료(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) POS로 확인된 매출액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처, 인쇄물 등)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 현금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등
	⑯ 코로나 피해 관련 증빙 자료	△	△	△	주거래처 생산지연, 중국 수출입피해 등 매출액 이외 간접 피해사실 증빙자료 (단, 간접피해사실의 경우 대상여부 판단은 용자심의회 최종 판단)

※ 참고 : ● 해당분야 필수서류, △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, ◎ 준공후 제출서류(보완서류)

※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제출

-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야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